

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
(김충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2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3. 10. 29.

발 의 자 : 김충조 · 김용학 · 이낙연  
김옥두 · 정철기 · 유재규  
김경재 · 강운태 · 김경천  
김홍일 · 송석찬 · 천용택  
김태홍 · 전갑길 · 정우택  
이주영 · 이정일 · 이훈평  
이원성 · 김상현 · 신경식  
이원창 · 배기운 · 이성현  
박주선 의원(25인)

제안이유

1980년 5.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,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,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주요골자

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2004년 3월 31

일까지 연장함(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2000년 2월 29일”을 “2004년 3월 31일”로 하고,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보상금등의 지급신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<u>2000년 2월 29</u>일까지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.</p>	<p>제8조(보상금등의 지급신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2004년 3월 31</u> 일-----.</p> <p>&lt; 삭제 &gt;</p>